

# 서울지방법원

|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-|
| 1999. 11. 4. 판결선고 | 인 |
| 1999. 11. 4. 원본영수 |   |

## 판 결

사 건 99가소576995 손해배상(기)  
 원 고 1. 이 신 혜  
 2. 김 선 희  
 3. 이 경 연

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경연, 모 김선희  
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, 하승수

피 고 대 한 민 국

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

소송수행자 노 병 옥

변 론 종 결 1999. 10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이신혜에게 금 3,098,884원, 원고 김선희, 이경연에게 각 금 500,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99. 7. 8.부터 1999. 11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이신혜에게 금 8,256,120원, 원고 김선희, 이경연에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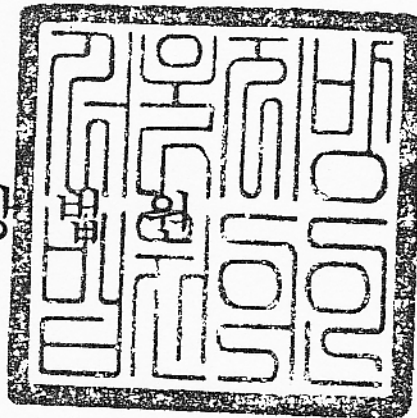
각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  
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1999. 11. 4.

판 사 김 종 근 \_\_\_\_\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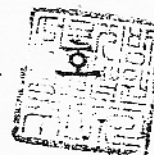
정 본 입 니 다.

서 울 지 방



· 1999. 11. 12

법원주, 보 윤 . 진



민소 151 ②